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천현 전문위원 정천현

입니다. 충청북도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도세과세면제를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忠淸北道새마을事業支援을爲한道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檢 討 報 告

1. 提 出 者 : 忠淸北道知事

2. 提出日字 및 回附日字

가. 提出日字 : 1992年 4月 1日

나. 回附日字 : 1992年 4月 1日

3. 提出理由

- 農漁村 定住生活圈 開發事業으로 推進하고 있는 農家住宅整備事業은 國家의 主要政策事業으로 現在 地方稅 減免惠澤을 받고 있는 農漁村住宅改良事業과 類似한 事業임.
- 稅制支援의 衡平을維持하고 農民의 政府施策에 對한 同參을 誘導, 事業의 圓滑한 推進을 支援하기 爲하여 課稅免除고자 함.

4. 主要骨子

- 免除對象

農漁村 定住生活圈 開發事業中 農漁家住宅 整備事業 및 奧地 綜合開發事業計劃으로 因하여 取得하는 建築物(新築·改築·改良包含) 및 土地

- 免除稅目

取得稅, 登錄稅

5. 檢討意見

- 農漁村 定住生活圈 開發事業으로 推進하고 있는 農家住宅 整備事業은 國家의 主要政策 事業으로 現在 地方稅·減免惠澤을 받고 있는 農漁村 住宅改良 事業과 類似한 事業임에 免除惠澤을 받지 못하고 있어,

- 稅制支援의 衡平을 錐持하고 農民의 政府時策에 對한 同參을 誘導, 事業의 圓滑한 推進을 支援하기 為하여 農漁村 定住生活圈 事業中 農漁家住宅 整備事業 및 奧地綜合開發 事業計劃으로 因하여 取得하는 建築物(新築·改築·改良包含) 및 土地에 對하여 課稅減免로자 改正하는 것으로서 忠淸北道 새마을事業支援을 為한 道稅課稅免除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를 改正施行함이 妥當하다고 思料됨.

6. 添 附

忠淸北道 새마을事業支援을 為한 道稅課稅免除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